

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일부 모듈로 파일 확인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억2천만원, 3 카피 총 3억 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3) 이처럼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조해 온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시 통상 원고에 의해 큰 폭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1)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2) 한편, 이 사건에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정으로서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견적서는 피고 회사와 관련된 통상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료라 할 것인데, 2차 견적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집합 1세트의 이용료에 관해 '공급가격 합계 24,132,000원', '제안금액 17,900,000원', '차기년도 연간 사용료 3,681,00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는 그 이용계약에 기하

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연간 사용료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이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수요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에 대해 별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의 직원 E이 2012년경 이 사건 프로그램 5.19 버전을, 2014년경 이 사건 프로그램 5.20 버전을 별도로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이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E이 복제한 수량을 1세트로 봄이 타당하다.

다) 2차 견적서에는 '공급가'와 '제안금액'(할인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할인금액은 장차 이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가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가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외적·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1세트 24,132,000원)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 최초 공급가(PLC, Primary License Charge)와 연간 사용료(ALC)를 합산하여 이용료를 청구해 왔으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연간 사용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직원 E이 2012. 12.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F은 2016. 8.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복제하였으므로, E이 2012. 12.경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년도인 2013. 12.부터 복제 사실이 적발되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2016. 11.까지 3년간의 연간 사용료(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간 사용료는 제안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가 통상이용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및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계약 체결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용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일응 손해액을 산정하면 계산상 59,307,000원[= (1세트 공급가 24,132,000원 × 2세트(E·F 각 1세트)) + (연간 사용료 3,681,000원 × E 1세트 × 3년)]이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6,000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